

서울대학교 농업생명과학대학 교육연수원 규정

제정 1997. 9. 17. 규칙 제 1137호
개정 2002. 2. 21. 규칙 제 1247호
2007. 2. 8. 규칙 제 1584호
2008. 11. 5. 규칙 제 1699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 및 동 규정 시행규칙에 의한 서울대학교 농업생명과학대학 교육연수원(이하 “연수원”이라 한다)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연수원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전문계 중등교원의 각종 자격연수
2. 전문계 중등교원의 각종 직무연수
3. 전문계 중등교원의 특별연수
4. 기타 전문계 중등교원 관련 지원서비스
5.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시·도 교육감 등이 위탁 또는 지정하는 각종 연수
6. 교육정보화 실습 및 원격 연수
7. 교육현장과의 체계적 연계 구축을 위한 연수프로그램 연구 및 개발
8. 전문계 중등교육의 이론 및 실천과 관련된 연구

제3조(원장) ① 연수원에는 원장을 두되, 원장은 농산업교육과장이 겸무한다.

② 원장은 연수원의 사무를 통할하고 소속 교직원을 지휘·감독하며 연수원을 대표한다.

제4조(조직) ① 연수원에는 교육과정운영부와 행정실을 둔다.

② 교육과정운영부에는 부장을 두며, 본교 전임교수 중에서 원장의 추천으로 학장이 임명한다.

③ 교육과정운영부 및 행정실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교육과정운영부는 연수과정의 운영관리, 강사섭외, 교재제작, 연수생의 학습, 자율활동 보조와 학적관리 등 교무와 관련된 사항
2. 행정실은 일반서무, 회계, 물품관리, 시설 및 보안 등 일반행정 지원업무에 관한 사항

제5조(운영위원회) ① 연수원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원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농업생명과학대학 교무부학장, 농업생명과학대학 행정실장 및 연수원 교육과정운영부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며, 그 밖의 위원은 관련학과의 전임교수와 교육과학기술부, 시·도교육청 관계자 및 현장전문가 중에서 원장의 추천으로 학장이 위촉한다.

③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연수과정 계획에 관한 사항
2. 연수대상 및 정원에 관한 사항
3. 각종 규정의 심의에 관한 사항
4. 연수원의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5. 기타 연수원 운영에 관한 사항

④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6조(교육과정 심의위원회) ① 연수원의 교육과정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개설된 교육과정별로 교육과정심의위원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각 심의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원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연수원 소속 지도교수 중 일부를 위원으로 하며, 그 외의 위원은 농업생명과학대학 전임교수와 교육과학기술부, 시·도교육청 관계자 및 현장전문가 중에서 원장이 위촉한다.

③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교육과정 내용에 관한 사항
2. 과정수료 인정 및 평가에 관한 사항
3. 연수대상자 포상 및 징계에 관한 사항

④ 심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이수증서 교부) 원장은 연수교육 이수자에게 소정의 이수증서를 교부한다.

제8조(기타) 연수원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원장이 정한다.

부칙(제1137호, 1997.9.17.)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제1247호, 2002.2.21.)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제1584호, 2007.2.8.)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제1699호, 2008.11.5.)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